

# 브라질 연방공화국 통신부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브라질 연방공화국 통신부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는

양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목표 하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사회·경제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CT 발전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항 일반적 원칙

1.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련 법규와 본 양해각서(이하 'MOU'라고 한다)의 조항 및 평등, 호혜,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ICT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MOU는 국제법 하의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의 가용 예산 및 인력의 범주 내에서 이행된다.

## 제2항 협력 범위

양 당사자는 다음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 a) 4G 및 5G 등의 이동 통신
- b) 전파 자원 활용 및 감시 등의 주파수 관리 및 감시
- c) 광섬유(지상, 해양) 및 초고속인터넷(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의 통신 인프라

- d) 인터넷주소관리 및 네트워크 관리
- e) 사이버 보안
- f) 인공지능(AI) 기술 이용 및 통신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 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 등의 ICT 분야의 신산업
- h) ICT 표준화
- i) 스타트업 활성화 등의 기술 사업화
- j) 디지털 방송전환
- k) 통신 시스템 복구를 위한 긴급 시스템
- l) 디지털격차 해소 지원
- m)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분야

### 제3항 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다음의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 a)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교환
- b) 공동자금조달, ICT지원센터, 인프라 시범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 활성화
- c) ICT 전문가와 인력 교류 및 양국 내 ICT 교육 제공
- d) 회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축제, 전시회 등 상대방 당사자가 주관 하는 행사에 일방 당사자의 대표 참여
- e) 통신분야에서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기술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스타트업 활동 촉진 및 스타트업과 상대방 당사자의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간의 교류 활동 지원
- f) 기술 스타트업 대상 외국 전문가의 홍보 관련 멘토링 서비스, 컨설팅 프로그램, 투자자 관계 및 마케팅
- g) 기술 스타트업 기업가 대상 영주권 부여 제도화를 위한 기관간 회의 및 협력 조성
- h)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사업 활성화
- i)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협력활동

#### 제4항 운영위원회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대표 두 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당사자는 필요시 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킬 추가적인 참가자를 제한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본 MOU의 이행을 위해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운영 가이드 및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MOU하의 협력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사항이 있는지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며, 화상회의 또는 한국이나 브라질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

#### 제5항 자원

양 당사자는 각자의 예산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본 MOU하의 협력활동 이행에 필요한 자원 관련 사항을 개별 사례별로 합의한다.

#### 제6항 국제기구 내 협력

양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국제기구에서 협력한다. 국제기구에서 협력시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 논의 및 협상을 추진한다.

#### 제7항 정보 공개

1.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MOU하의 협력 활동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그 어떤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아니한다.
2. 본 MOU가 종료되더라도 본 조항은 계속 효력을 지닌다.

## 제8항 개정

본 MOU에 대한 개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 모든 수정사항은 본 MOU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9항 분쟁 해결

본 MOU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이견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 제10항 발효, 기간 및 종료

1. 본 MOU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방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한, 3년간 유효하다. 본 MOU는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3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2. 본 MOU의 종료시 이미 진행중에 있거나 완료되지 않은 협력활동은 양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MOU가 종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 양해각서는 2021년 8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각 2부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통신부를 위하여



파비오 살르스티노 메스키타 지 파리아  
통신부 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하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